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청,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68
----------	------

제출일자: 2019. 11. 27.

제출자: 달성군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청,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맞춤형 통합복지를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이 완료되어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면사무소」 명칭을 「면 행정복지센터」로
명칭변경을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청,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면사무소 명칭 변경: 면사무소 ⇨ 면 행정복지센터
- 관련 조례의 일괄 개정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6조

2) 행정안전부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명칭변경 추진지침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참조

2) 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4)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입법예고: 2019. 2. 7. ~ 2. 27.(20일간)

6) 비용추계서: 생략(「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제1호에 따름)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청,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청,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청,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2조 중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고, 같은 조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 ②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 ③ 대구광역시 달성군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 ④ 대구광역시 달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 ⑤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 ⑥ 대구광역시 달성군 행복택시 등 운행 및 이용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구지면사무소”를 “구지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 ⑦ 대구광역시 달성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 ⑧ 대구광역시 달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읍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를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 ⑨ 대구광역시 달성군 면민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면사무소”를 “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별표】

달성군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읍면명	소 재 지
화원읍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594
논공읍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 1779
다사읍	달성군 다사읍 매곡로 7
유가읍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상업로 95
옥포읍	달성군 옥포읍 비슬로 2215
현풍읍	달성군 현풍읍 비슬로134길 157
가창면	달성군 가창면 가창로 1100
하빈면	달성군 하빈면 하빈로84길 1
구지면	달성군 구지면 창리로11길 38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대구광역시 달성군 군청,</u> <u>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 소재지에</u> <u>관한 조례</u>	<u>대구광역시 달성군청 및 읍·면</u> <u>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청 소재지 및 <u>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u>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읍·면 행정복지센터</u> ----- -----
제2조(소재지) 달성군청 소재지는 대구 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에 두고 각 <u>읍 행정복지센터 및 면사무소</u>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제2조(소재지) ----- ----- ----- <u>읍·면 행정복지센터</u> ----- -----

□ 「지방자치법」 제6조(사무소의 소재지)

- 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의 소재지와 자치구가 아닌 구 및 읍·면·동의 사무소의 소재지는 종전과 같이 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면·동은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행정면(行政面)·행정동(行政洞)을 말한다.

□ 「행정안전부 읍면동 사무소(주민센터)명칭변경 추진지침」**3. 추진개요**

-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 “행정복지센터”로 변경
- 대상 및 시행시기
 - (대상) 복지허브화 시행 읍면동
 - (시행시기) ‘16년 상반기부터 자치단체별 시행시기에 맞추어 추진